

선	기관의장
람	



호외 2023년 4월 24일

발행자 : 익산시청  
발행처 : 홍보담당관

## 고 시

- 익산시 고시 제2023-83호 청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 
변경인가 고시 ..... 01
- 익산시 고시 제2023-89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..... 04

## 공 고

-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-1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..... 06

## 입법예고

- 익산시 공고 제2023-1257호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07

회								
람								



익산시 고시 제2023-83호

## 청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 일원의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4일  
의 산 시 장

#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재건축 정비사업
- 명 칭 :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

###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고
기정	청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	익산시 신동 142-111번지 외 4필지	14,532	

###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청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
- 사무소 소재지 : 익산시 인북로 64길 32, 2층
- 대표자 성 명 : 최 병 일

### 4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23. 04. 14.

### 5. 관리처분계획 변경 요지

# 의산시 시보

호외 2023년 4월 24일

##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
주용도		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	비고
건축면적		3,612.4685m <sup>2</sup>	
건축연면적	지상	31,119.1580m <sup>2</sup>	
	지하	13,446.1019m <sup>2</sup>	
	합계	44,565.2599m <sup>2</sup>	
건축규모		① 분양아파트 4동 / 상가 2동 ② 지하2층 / 지상28층 ③ 공동주택(295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	
건폐율		26.4720%	
용적률		228.0393%	

##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### 1) 변경전

구 분	형별	전용 면적	건 립 세대수	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			비고
				조합원분양	일반분양	보류지	
분 양 주 택	59A	59.9765	61	53	6	10	
	59B	59.9244	45	44			
	72A	72.9181	18	17			
	72B	72.9802	14	13			
	75	75.9414	46	45			
	84A	84.4458	63	61			
	84B	84.5668	48	46			
	소 계	295	279	6			0
분 양 상 가	상가 A동	지상1층 (167.2375)	6	6	6	10	
		지상2층 (196.7500)	6	6			
		지상3층 (196.7500)	6	6			
	상가 B동	지하1층 (466.2546)	10	10	2		
		지상1층 (447.4087)	10	8			
	소 계	38	36	2			

# 익산시 行 시보

호외 2023년 4월 24일

## 2) 변경후

구 분	형별	전용 면적	건 립 세대수	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				비고
				조합원분양	일반분양	보류지	임대	
분 양 주 택	59A	59.9765	61	53	6	4		
	59B	59.9244	45	45				
	72A	72.9181	18	18				
	72B	72.9802	14	14				
	75	75.9414	46	45				
	84A	84.4458	63	63				
	84B	84.5668	48	47				
	소 계	295	285		6	4	0	
분 양 상 가	상가 A동	지상1층 (167.2375)	6	6				
		지상2층 (196.7500)	6	6				
		지상3층 (196.7500)	6	6				
	상가 B동	지하1층 (466.2546)	10	10				
		지상1층 (447.4087)	10	8	2			
	소 계	38	36		2	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(변경없음)

구 분	용도폐지	신 설			
		도로	설치개요	규모	비고
규모( $m^2$ )	해당 사항 없음.	소로 1-203	L=179m B=15m이하	885.6	완화차로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완료 후(변경없음)

마. 기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, 총수입, 소요비용 등

6. 기타 관련서류는 익산시 주택과(063-859-5965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익산시 고시 제2023-89호

##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익산시 왕궁면 동촌리, 발산리, 평장리, 흥암리 일원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(예정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24일

익산시장

### 1.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내역

구분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고
지정	익산시 왕궁면 동촌리, 발산리, 평장리, 흥암리 일원	2,065,753	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(예정지)

### 2. 제한사유

-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(예정지)에 대하여 시 기본계획, 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.

### 3. 제한기간

- 2023. 4. 24. ~ 2026. 4. 23. (고시일로부터 3년간)  
(단,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등 수립시 해제)

**4. 제한행위**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다음의 행위

- 가.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
- 나.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
- 다. 토석의 채취
- 라. 토지 분할 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)
- 마.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(녹지지역·관리지역·자연환경보전지역)

**5. 제한 제외대상**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 제4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

- 1)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(다만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)
- 2) 「건축법」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·증축 또는 재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(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)
- 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

나.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 시설의 설치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
다.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 (단,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)

라.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

마.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내에서의 건축(동일용도에 한함) 및 부대시설의 설치(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,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)

사. 기존에 개별법령에 따른 결정·허가·인가 등을 받은 대상지는 당초 결정·허가·인가 등을 받은 범위 내 행위

**6. 기타**

-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(☎063-859-3972) 및 도시개발과 (☎063-859-5591)에 열람 비치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[www.eum.go.kr](http://www.eum.go.kr)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-19호

##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
2. 공고기간 : 2023. 4. 19. ~ 2023. 5. 9. (20일간)
3. 공고대상

차량번호	차명 (차대번호)	소유자명	운행정지 명령일	사유	비고
276서5879	레인저로버 4.4D (SALGA2JF6GA258496)	양*한	2023. 4. 19.	소유자 요청	

### 4. 공고내용

- 가. 자동차사용자(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)는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,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- 다.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,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,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될 수 있고,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라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(063-859-465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9일

익산시장  
(관인생략)

익산시 공고 제2023-1257호

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4일

의 산 시 장

##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·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명칭과 위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업무 및 기능(안 제3조)

-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·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·기업의 생산제품 등 전시·판매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

다. 관리 및 운영(안 제5조)

- 시장이 관리·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 가능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함

라. 운영비 지원(안 제6조)

-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

마.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·임대계약의 취소(안 제7조 ~ 제8조)

- 수탁자는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
-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탁·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

바.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(안 제9조 ~ 제10조)

- 센터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시설사용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함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.법인 또는 기관.단체 등은 2023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(참조 :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.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(우)54622 익산시 무왕로 1397(부송동, 익산종합경기장)  
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(전화 859-3971, 팩스 859-3978)

라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 등

###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담당자 (063-859-397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[붙임 1]

익산시 조례 제 호

##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기관·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시설의 명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하며, 위치는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-1번지 내에 둔다.

**제3조(업무 및 기능)** “센터”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·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·기업의 생산제품 등 전시·판매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

**제4조(사용자의 범위)**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기업, 기관, 단체 근로자와 그 가족
2. 익산시민
3. 기타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자 등

**제5조(관리 및 운영)**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.

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르며,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장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6조(운영비 지원)**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, 시설 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7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센터를 협약·계약 조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·인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·감독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 책임을 진다.

**제8조(위탁·임대계약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·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
3. 그 밖에 위탁·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제9조(사용허가)**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③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**제10조(시설사용료)** ① 제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: 면제

2.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: 면제

3.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50페센트 감면
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: 50페센트 감면

②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)**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시설사용료(제10조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비 고
라이브 방송실	1회 사용 (2시간 이내)	1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0% 가산</li></ul>
세미나실	1회 사용 (2시간 이내)	1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0% 가산</li></ul>
체력단련실	1회 사용	1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1개월 : 15,000원</li><li>◦ 3개월 : 40,000원</li></ul>

호외 2023년 4월 24일

[불임 2]

##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입법 예고명	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 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# 의 산 시 장 귀하

